

입법예고 종법령명	신도법 일부개정안		
담 당	포교원 포교부 신도팀 (02-2011-1896)	입법예고일	2025년 2월10일 ~ 3월 1일

1. 이유 및 취지

- 중앙중무기관 조직 개편에 따른 자구 수정과 현재 사문화된 일부 제도를 폐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국가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수정함(제4조 제4호 개정)
- 나. 현재 운영되지 않는 어린이 신도증 제도 관련 규정을 삭제함(제8조 제2항 삭제)
- 다. 유명무실화된 신도품계 제도를 폐지하고, 이에 따른 임원 자격 조항과 신도의 징계조항을 개정함(제20조, 제25조, 제28조, 제36조 개정)

3.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정안
제4조(신도의 권리) 신도는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. 1. 신도 교육을 받을 권리 2. 중단 또는 사찰에서 행하는 법회·행사 등에 참여할 권리 3. 신도회 또는 신도단체를 결성하거나 이에 가입하여 활동할 권리 4. 문화재구역입장료 징수 사찰 무료입장 및 각종 중단 시설을 무료 또는 우선적으로 이용할 권리 5. 중단과 사찰의 유지 및 발전에 동참할 권리 6. 기타 중법령에서 정하는 권리	제4조(신도의 권리) 신도는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.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문화유산구역입장료 징수 사찰 무료입장 및 각종 중단 시설을 무료 또는 우선적으로 이용할 권리 5. ~ 6. (현행과 같음)
제8조(신도증 발급) ① 사찰 주지는 삼귀의계와 5계를 수지한 자에 대하여 본종의 중지를 신수봉행할 것을 확인한 후, 신도등록 절차를 이행하여 중단 양식의 신도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한다. 다만 사찰 주지는 신도등록 절차에 대하여 교구본사의 조력을	제8조(신도증 발급) 사찰 주지는 삼귀의계와 5계를 수지한 자에 대하여 본종의 중지를 신수봉행할 것을 확인한 후, 신도등록 절차를 이행하여 중단 양식의 신도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한다. 다만 사찰 주지 는 신도등록 절차에 대하여 교구본사의 조력을

현행	개정안
<p>받을 수 있다.</p> <p>② 포교원은 어린이청소년에 대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 어린이청소년신도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, 어린이청소년신도증 소지자가 성년이 되면 본법 제16조 1호의 교육 이수에 따른 품계를 품수한 것으로 본다.</p>	<p>받을 수 있다.</p> <p>② <항 삭제></p>
<p>제11조 (기본교육) ① 본종의 신도는 중단에서 인정하는 신도기본교육기관에서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신도기본교육기관은 학사관리에 있어 포교원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.</p> <p>③ 사찰신도회와 개별신도단체의 임원, 각급 중무기관의 중무원, 중단 산하 기관·단체의 중사자는 취임 후 1년 이내에 제1항의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.</p>	<p>제11조 (기본교육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신도기본교육기관은 학사관리에 있어 포교부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2조 (전문교육) ① 기본교육을 이수한 신도는 포교원이 인가한 신도 전문교육기관에서 전문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.</p> <p>② 제1항의 전문교육을 이수한 자는 일반포교사 선발과정에 응시할 자격이 부여된다.</p> <p>③ 전문교육기관은 학사관리에 있어서 포교원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.</p>	<p>제12조(전문교육) ① 기본교육을 이수한 신도는 중단인가 신도 전문교육기관에서 전문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.</p> <p>② 제1항의 전문교육을 이수한 자는 포교사 선발과정에 응시할 자격이 부여된다.</p> <p>③ 전문교육기관은 학사관리에 있어서 포교부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.</p>
<p>제13조 (지도자 교육) 포교원은 전문포교사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는 자 중에서 지도자로서 소양이 있는 자를 선발하여 지도자교육과정을 개설한다.</p>	<p>제13조(지도자 교육) 포교부는 지도자로서 소양이 있는 자를 선발하여 지도자교육과정을 개설한다.</p>
<p>제14조 (재교육) ① 신도회 및 신도단체의 임원과 제21조 내지 제23조에 해당하는 자는 포교원에서 개설하는 각종 연수교육 등 재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제1항의 재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는 해당 단체의 임원 또는 제21조 내지 제23조의 자격을 상실한다.</p>	<p>제14조(재교육) ① 신도회 및 신도단체의 임원은 포교부에서 개설하는 각종 연수교육 등 재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제1항의 재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는 해당 단체의 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.</p>
<p>제15조 (신도교육기관의 설립 및 운영자) 각종 신도교육기관의 설립 및 교육의 운영자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.</p> <p>1. 기본교육기관 : 사찰, 수개의 사찰이 공동으로 설립한 기본교육기관, 포교원 인가 전문교육기관</p>	<p>제15조(신도교육기관의 설립 및 운영자) 각종 신도교육기관의 설립 및 교육의 운영자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기본교육기관 : 사찰, 수 개의 사찰이 공동으로 설립한 기본교육기관, 중단인가 전문교육기관</p>

현행	개정안
2. 전문교육기관 : 포교원 인가 전문교육기관 3. 지도자교육기관 : 포교원 4. 재교육기관 : 포교원 및 포교원 지정 재교육기관	2. 전문교육기관 : 중단인가 전문교육기관 3. 지도자교육기관 : 포교부 4. 재교육기관 : 포교부 및 중단 지정 재교육기관
제5장 각종 신도품계 및 신도의 자격품수	제5장 신도의 자격품수
제20조 (각종 품계 및 자격품수) ① 포교원은 중단 신도에 대하여 각급 교육이수와 신행경력에 따른 단계별 신도품계와 일반포교사, 전문포교사 등의 자격을 품서 하고 관리한다. ② 소정의 절차에 따라 각급 품계를 품수한 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신도의 권리 및 의무를 향유한다. ③ 본법 제16조의 지도자교육을 이수한 품계자에 대하여 중단은 그 신분을 보장하여야 한다. ④ 신도품계의 명칭 및 품수절차 등의 세부사항은 종령으로 정한다.	제20조 (신도의 자격품수) ① 포교부는 중단 신도에 대하여 각급 교육 이수과 신행 경력에 따라 포교사 등의 자격을 품서하고 관리한다. ②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신도 자격을 품수한 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신도의 권리 및 의무를 향유한다. ③ (현행과 같음) ④ 각종 신도 자격에 관한 세부사항은 종령으로 정한다.
제21조 (일반포교사) 전문교육 이수자 또는 종령에서 정한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소정의 선발 절차를 마친 신도는 일반포교사 자격을 품수한다.	제21조 <조 삭제>
제22조 (전문포교사) ① 일반포교사로서 3년 이상 전문 포교분야에서 활동한 경력이 인정된 자 중에서 소정의 선발절차를 마친 신도는 전문포교사 자격을 품수한다. ② 중단 및 사찰에서는 전문포교사의 신분과 활동을 보장하여야 한다.	제22조 <조 삭제>
제23조 (기타 포교자격자) 포교원장은 신도전문교육기관 또는 기타 포교자격자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소정의 선발절차를 거쳐 법령에서 정한 포교 자격자를 선발하고 운용한다.	제23조 (기타 포교자격자) 포교부장 은 신도전문교육기관 또는 기타 포교자격자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소정의 선발절차를 거쳐 법령에서 정한 포교 자격자를 선발하고 운용한다.
제25조 (임원) ① 사찰 주지는 사찰신도회가 회칙에 따라 선출하여 추천한 회장 후보를 사찰신도회장으로 임명한다. 다만 사찰신도회장은 중단 신도품계 품수자이고, 삼보에 대한 신심이 견고하며 언행이 타의 모범이 되는 자이어야 한다. ② 사찰 주지는 사찰신도회장 및 사찰신도회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해임할 수 있다. 1. 직무를 해태한 경우	제25조 (임원) ① 사찰 주지는 사찰신도회가 회칙에 따라 선출하여 추천한 회장 후보를 사찰신도회장으로 임명한다. 다만 사찰신도회장은 중단 신도등록을 완료한 자로 삼보에 대한 신심이 견고하며 언행이 타의 모범이 되는 자이어야 한다. ② ~ ③ (현행과 같음)

현행	개정안
<p>2. 비위를 저지른 경우</p> <p>3. 사찰 또는 중단 또는 불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</p> <p>③ 사찰신도회장은 사찰 내 신도활동을 대표하며 관리한다.</p> <p>④ 사찰신도회 임원은 사찰 주지의 승인을 받아 사찰신도회장이 임면한다. 다만 사찰신도회 임원은 <u>중단 신도품계 품수자</u>이어야 한다.</p> <p>⑤ 사찰신도회 임원은 중단이 인증하는 재교육을 연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.</p>	<p>④ 사찰신도회 임원은 사찰 주지의 승인을 받아 사찰신도회장이 임면한다. 다만 사찰신도회 임원은 중단 신도등록을 완료한 자이어야 한다.</p> <p>⑤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28조 (교구신도회 임원) ① 교구본사 주지는 교구신도회의 대의원총회가 선출하여 추천한 교구신도회장 후보자를 교구신도회장으로 임명한다. 다만 교구신도회장은 중단에서 정한 신도 의무교육 이수자이어야 한다.</p> <p>② 교구본사 주지는 교구신도회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구본사 중무회의의 의결로 교구신도회장을 해임할 수 있다.</p> <p>1. 직무를 해태한 경우</p> <p>2. 비위를 저지른 경우</p> <p>3. 교구 또는 중단 또는 불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</p> <p>③ 교구신도회장은 교구 내 신도회 및 신도단체의 활동을 대표하고 관리한다.</p> <p>④ 교구신도회 임원은 교구본사 주지의 승인을 받아 교구신도회장이 임면한다. 다만 교구신도회 임원은 중단 <u>신도품계 품수자</u> 및 교구신도회 회원이어야 한다.</p> <p>⑤ 교구신도회 임원은 중단이 인증하는 재교육을 연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.</p>	<p>제28조 (교구신도회 임원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교구신도회 임원은 교구본사 주지의 승인을 받아 교구신도회장이 임면한다. 다만 교구신도회 임원은 중단 신도등록을 완료한 교구신도회 회원이어야 한다.</p> <p>⑤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30조 (신도단체) ① 신도단체는 직장, 직능, 계층, 특수분야의 신도들이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성하여 중단에 등록된 단체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관할처를 둔다.</p> <p>1. 개별 신도단체 : 사찰</p> <p>2. 지역단위 신도단체(기초 및 광역지역) : 교구</p> <p>3. 전국단위 신도단체 : 포교원</p>	<p>제30조 (신도단체) ① 신도단체는 직장, 직능, 계층, 특수 동의 분야에서 포교 및 신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구성하여 중단에 등록된 단체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관할처를 둔다.</p> <p>1. 개별 신도단체 : 사찰</p> <p>2. 지역단위 신도단체(기초 및 광역지역) : 교구</p> <p>3. 전국단위 신도단체 : 포교부</p>

현행	개정안
<p>② 신도단체의 조직, 직제, 기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회칙으로 정하고, 제정하거나 개정된 회칙은 관할처 신도회장의 인준과 중무기관장(사찰 주지, 교구본사 주지, 포교원장)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.</p>	<p>② 신도단체의 조직, 직제, 기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회칙으로 정하고, 제정하거나 개정된 회칙은 관할처 신도회장의 인준과 중무기관장(사찰 주지, 교구본사 주지, 포교부장)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.</p>
<p>제31조 (신도단체의 등록 및 등록 취소) ① 신도단체는 중법령에 따라 등록한 날부터 중단의 지원 및 보호를 받는다.</p> <p>② 신도단체의 등록은 관할처 신도회장의 추천과 중무기관장의 승인으로 완료된다.</p> <p>③ 사찰 주지, 교구본사 주지, 포교원장은 관할하고 있는 신도단체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때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단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된 때 2. 단체의 목적에 비추어 중대한 위반이 있는 때 3. 중헌 및 중법에 위반한 행위를 한 때 4. 중단의 중요 지침을 위배하여 활동한 때 5. 관할처 신도회장으로부터 당해 신도단체에 대한 등록취소 건의가 접수된 때 	<p>제31조 (신도단체의 등록 및 등록 취소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사찰 주지, 교구본사 주지, 중무원장은 관할하고 있는 신도단체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때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~ 5. (현행과 같음)
<p>제32조 (신도단체의 등록요건) ① 각급 신도단체의 중단등록 요건은 다음 각 호의 각 목과 같고,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당해 관할처에 제출하여야 하며, 등록 관할처는 당해 신도단체에 등록증을 교부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개별 신도단체 및 지역단위 신도단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. 명문화된 회칙 보유 나. 회칙 또는 규약에 본 중의 중지중풍 봉대 명시다. 30인 이상의 회원 라. 등록 관할처 신도회장의 추천 2. 전국단위 신도단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. 명문화되고 소속 지부(지회) 및 소속 단체가 따르는 단일한 회칙 보유 나. 회칙 또는 규약에 본 중의 중지중풍 봉대 명시다. 5개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에 10개 이상의 지부(지회) 또는 소속 단체 라. 500명 이상의 회원 마. 등록 관할처 신도회장의 추천 <p>② 포교원장은 신도단체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 제1항 각 호의 각 목의 요건에</p>	<p>제32조 (신도단체의 등록요건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중무원장은 신도단체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조 제1항 각 호의 각 목의 요건</p>

현행	개정안
<p>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중앙신도회 소속 단체로 등록받을 수 있으며, 이 경우 전국 단위 신도단체의 등록 절차를 준용한다.</p> <p>1. 의료인, 법조인, 교수·교사, 언론인, 공무원, 예술인, 연예인 등 전문직 종사자의 신도단체 2. 특정계층(유아, 어린이, 청소년, 노인, 여성 등) 및 특수분야(장애인, 교육 등)의 신도단체</p>	<p>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중앙신도회 소속 단체로 등록받을 수 있으며, 이 경우 전국 단위 신도단체의 등록 절차를 준용한다.</p> <p>1. ~ 2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34조 (중앙신도회 구성) ① 종단은 전국 신도의 대표기구로 중앙신도회를 두고, 중앙신도회는 종단의 각급 신도회 및 신도단체의 활동을 지원 및 관리한다.</p> <p>② 중앙신도회는 본종의 중정을 증명으로 하고, 총무원장을 당연직 총재로, 포교원장을 당연직 부총재로 한다.</p> <p>③ 중앙신도회의 대의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.</p> <p>1. 교구신도회의 유자격 대의원 2. 중앙신도회 소속 신도단체의 유자격 대의원 3. 대의원 총회 개최 시 중앙신도회 유자격 회장단</p>	<p>제34조 (중앙신도회 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중앙신도회는 본종의 중정을 증명으로 하고, 총무원장을 당연직 총재로, 포교부장을 당연직 상임 지도법사로 한다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35조 (중앙신도회 사업 등) ① 중앙신도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</p> <p>1. 종단 신도조직 활동의 지원과 관리 2. 종단 주요 사업 동참 및 지원 3. 종단 외호와 발전을 위한 활동 4. 종단 신도조직의 공제활동 5. 직장직능, 특정계층 또는 특수분야의 신도단체 설립 추진 및 관리 6. 종단 중앙중무기관이 위임한 사업 7. 종단 발전을 위한 각종 건의 및 제안 8. 기타 회칙 및 총회에서 결의한 사업</p> <p>② 포교원장은 중앙신도회의 사업 및 활동을 지도 및 감독한다.</p>	<p>제35조 (중앙신도회 사업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포교부장은 중앙신도회의 사업 및 활동을 지도 및 감독한다.</p>
<p>제36조 (중앙신도회 임원) ① 총무원장은 중앙신도회가 대의원총회에서 <u>선출하여 포교원장의 승인을 받아 추천한</u> 중앙신도회장 후보자를 중앙신도회장으로 임명한다. 다만 중앙신도회장은 종단이 정한 신도의무교육 이수자이어야 한다.</p>	<p>제36조 (중앙신도회 임원) ① 총무원장은 중앙신도회가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여 추천한 중앙신도회장 후보자를 중앙신도회장으로 임명한다. 다만 중앙신도회장은 종단 신도등록을 완료한 자로서 종단이 정한 신도의무교육을 이수한 자이어야 한다.</p>

현행	개정안
<p>② 총무원장은 중앙신도회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포교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총무원 중무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.</p> <p>1. 직무를 해태한 경우 2. 비위를 저지른 경우 3. 중단 또는 불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</p> <p>③ 중앙신도회 감사는 중앙신도회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한다.</p> <p>④ 중앙신도회 부회장은 중단 신도품계 품수자 중에서 대의원총회의 인준을 받아 중앙신도회장이 임명한다. 다만, 지역부회장은 회칙에 규정된 요건에 따라 중앙신도회장이 임명한다.</p> <p>⑤ 중앙신도회장은 중법령과 회칙에 따라 중단 신도를 대표하며, 신도조직을 지도한다.</p> <p>⑥ 중앙신도회장은 재임 중 정당 활동을 할 수 없다.</p> <p>⑦ 중앙신도회 임원은 중단이 인증하는 재교육을 연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.</p>	<p>② 총무원장은 중앙신도회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총무원 중무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중앙신도회 부회장은 중단 신도등록을 완료한 자 중에서 대의원총회의 인준을 받아 중앙신도회장이 임명한다. 다만, 지역부회장은 회칙에 규정된 요건에 따라 중앙신도회장이 임명한다.</p> <p>⑤ ~ ⑦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38조 (회칙) ① 중앙신도회의 조직, 직제, 임원임기, 대의원 및 대의원 수, 사업 등 기타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은 중령으로 정하며, 세부사항은 회칙으로 정한다.</p> <p>② 중앙신도회 회칙은 중법령을 준수하며, 중법령에 우선할 수 없다.</p> <p>③ 중앙신도회 회칙은 대의원총회의 의결로 제정하거나 개정하며, 포교원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.</p>	<p>제38조 (회칙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중앙신도회 회칙은 대의원총회의 의결로 제정하거나 개정하며, 포교부장의 동의를 받은 후 총무원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.</p>
<p>제39조 (조직의 운영) ① 각급 신도회 및 신도단체는 중앙신도회에 소속된다.</p> <p>② 중앙신도회장은 신도 활동에 대한 사업 및 활동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역의 공동의제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교구신도회장을 대표자로 하는 지역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.</p> <p>③ 중앙신도회장은 사업계획 및 결산을 분기별로 포교원장에게 보고한다.</p> <p>④ 중앙신도회의 사무는 중단의 지도를 준수하며, 중앙신도회는 필요 시 중단에 행정인력의 지원을</p>	<p>제39조 (조직의 운영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중앙신도회장은 사업계획 및 결산을 분기별로 포교부장에게 보고한다.</p> <p>④ ~ ⑤ (현행과 같음)</p>

현행	개정안
<p>요청할 수 있다.</p> <p>⑤ 중앙신도회는 원활한 활동과 운영을 위하여 중 단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으며, 사업 및 활동을 통하여 중단 예산에 기여한다.</p>	
<p>제40조(포상) 신도로서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이를 포상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신행상 남의 모범이 되는 자 2. 교화사업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자 3. 삼보호지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자 4. 사찰 창건, 각종 교화시설 건립과 수리, 사원 보수에 공적이 있는 자 5. 사회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6. 기타 중단과 불교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자 	<p>제40조(포상) 신도로서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~ 6. (현행과 같음)
<p>제41조 (징계) ① 신도의 징계는 다음의 각 호의 종류로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출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. 신도증을 회수하여 파기하고 신도등록을 말소하며, 신도회 및 등록된 신도단체의 회원자격을 박탈한다. 나. 참회 및 근신의 정상참작에 따른 재입교는 징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야 가능하다. 2. 공권정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. 1개월 이상 5년 이하의 기간으로 한다. 나. 집행 기간 중 신도회, 등록된 신도단체의 임원이 될 수 없으며, 임원인 자는 당연 면직된다. 3. 문서 견책 : 서류상으로 경고하고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 4. 품계감급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. 품계감급은 최대 2단계까지로 한다. 나. 품계감급자의 대우는 감급품계에 상응한다. <p>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징계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공공연히 삼보를 비방한 자 2. 중단의 파괴와 분열을 목적으로 단체를 결성하거나 가입하여 주도적으로 활동한 자 3. 중헌 중법을 위반한 자 4.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중단 기물을 고의로 	<p>제41조 (징계) ① 신도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~ 3. (현행과 같음) <p>4. <호 삭제></p> <p>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징계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~ 8. (현행과 같음)

현행	개정안
파괴한 자 5. 중단의 재산상 손실을 가한 자 6. 중무 집행을 방해한 자 7.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단의 이익과 명예를 훼손한 자 8. 신도위의를 현저히 훼손한 자	
<신설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칙<불기2569(2025).00.00 개정> 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</p>